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u>2</u>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 - 목 차 - -

1. 총 칙
2.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3.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4. 부 칙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HD현대삼호(주) (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하며, **총무부**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을 의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표준서번호	HS - A220 - 165	개정번호	2
	표준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2021. 3. 12.)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2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